

자유무역협정의 실체를 알면 한·칠레 협상의 정도가 보인다



김 충 실
경북대학교 교수

집중기획

한 ·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제5차협상이 차질을 빚기까지 우리 농민들에게도 많은 우역곡절이 있었다.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농민단체의 시위에 이어서 이에 뒤질세라 경제단체의 입장표명이 있었고, 그리고 부처간의 견해차이 뿐만 아니라 급기야 당정간의 격론이 불거질 만큼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다루어질만큼 급박하게 돌아갔다.

도대체 자유무역협정이 뭐길래 왜들 이르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것이 그만큼 국민경제와 산업부문에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기획에 자유무역협정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우리 낙농육우회원들을 포함한 전국민이 이에 대한 대응자세를 확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딱딱한 용어들을 읽어가려면 그만한 인내

심도 필요할 것이지만...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이 전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간에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지역간 경제통합은 두나라간 또는 소수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기타 무역제한을 가하고,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에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에서 수출과 수입량을 증가시켜 자유무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간 시장확대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시장규모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규모의 경제 등)과 비교우위설에 따른 고유의 자유무역 이익(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상주의에 접근하려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상의 차별조치를 수반함으로써 세계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차별로 인한 경제적 손실 내지는 자원을 잘못 사용되게 하는 수도 있다.

두나라간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경제적 이득이 증가하여 비회원국들은 그 전보다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면,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경제 전체의 후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FTA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비회원국들간에 분산되어 나타나는 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익은 소수의 회원국에 집중되어 나타나므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WTO)이 무역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양국간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서나 경쟁의 영역을 확대시켜 시장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는 긍정적 정책수단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FTA는 반드시 좋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간에 각기 다른 파급효과와 사회계층별 소득재분배 효과 등 다양한 면을 충분히 생각해서 추진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WTO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무역체제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WTO와 FTA 모두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고용 및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에게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FTA 회원국간에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 관세율 및 수출·입 제한조치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로 인해 FTA 회원국간의 교역비중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만든 NAFTA 때문에 그들의 교역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의 장점과 단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장점이 될 경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시기면에서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이고, 동태적 효과는 규모의 경제와 FTA 회원국내 시장에서 경쟁확대로 인한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정태적 효과는 회원국간의 관세 철폐로 교역조건의 변화가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교역에 대한 정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효과로서 회원국간 관세철폐로 인하여 값비싼 국산재화를 값싼 회원국의 수입재로 서로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이다.

이는 관세로 인해 야기되었던 잘못된 교역구조가 개선됨으로써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교역기회가 새롭게 형성되는 경우이다. 즉, 회원국간에 경쟁력이 강한 상품의 시장확대는 해당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그것은 곧 해당산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각 경제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자원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이다.

한편, 무역전환효과는 회원국간 관세 철폐로 인하여 협정이전까지 값싼 비회원국 재화가 값비싼 회원국 재화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즉, 자유무역협정 이전에는 비회원국의 재화가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협정체결 이후 회원국간의 교역에 관세가 제거됨으로써 회원국의 재화가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회원국간 관세철폐 이전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비회원국 재화가 더 싸다는 것임으로 값싼 비회원국 상품을 값비싼 회원국 상품으로 대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마이너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창출효과를 후생향상요인으로 무역전환효과를 후생악화요인으로 구분하고, 무역창출의 이익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할 경우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타당한 것

으로 파악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진실은 아니며 예외적 현상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등을 통해 회원국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회원국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그러한 가운데 회원국내 기업간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의 경제에 동태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회원국내에서는 생산비의 절감 및 생산설비의 효율적 이용과 같은 내부경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경제효과는 회원국내에서 특화구조 및 비교우위조건의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회원국간의 무역자유화는 회원국내 기업들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합리화, 기술혁신 및 근대화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생산비절감과 자원이용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되어 회원국내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나. 단점이 될 경우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정태 및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적 이득과 손실이 동시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도 갖고 있다.

(1) 능률원칙 못지않게 형평원칙도 중요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회원국내 관세가 철폐되어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나라는 확대된 시장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후진국일수록 그러한 입장이

되지 못하므로 양국간의 편차는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못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유무역협정이 건전하게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발전격차를 줄이고 모든 회원국이 확대된 시장의 이익을 서로 나누어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대규모 시장을 통한 자유무역의 이익도 최대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위 능률원칙과 형평원칙을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능률원칙은 치열한 경쟁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호혜성에 근거를 둔 형평원칙과 상호조화점을 찾기 어려운 근원적인 모순관계에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면 철저한 지식·정보에 의한 사실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농업 및 여타부문의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더라도 특정 산업부문과 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들 산업부문 및 계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산업부문별, 계층별 효과 등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농업과 같이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소위 다원적 가치가 큰 산업이 축소될 경우는 더욱 신중을 요한다. 우리 나라는 농업부문이 취약하므로 FTA 추진시 자원재배분 효과에 의해 산업

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농업부문의 관세구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관세구조에 있으므로 FTA 추진시 간접무역 굴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역전환효과로 말미암아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소비자후생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즉, 비회원국 비교우위상품의 회원국내 수입을 막아 회원국 국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특히 경제내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경제내에 생산요소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경제구조의 조정비용 (adjustment costs)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다국적 기업이 개입되면 FTA효과는 예측불허

오늘날 개발도상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력 및 그로 인한 회원국내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을 경우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선진자본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확대시켜 주는 시장조건만 제공해줄 수도 있다.

제품판매면에서 볼 때, 회원국간에 관세를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특정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이 다른 회원국으로 관세없이 쉽게 진출하게 되어 결국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회원국내 시장확대의 이익을 가로채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예외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FTA를 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양국간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비회원국가들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여서는 안된다(GATT 제24조 4항, 5항 b).

둘째, 중간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기간 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GATT 제24조 5항 c).

셋째,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하는 회원국은 곧바로 그 취지를 WTO 소관부서에 알려야 한다(GATT 제24조 제7항).

넷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관세 등 그 외의 제한적 통상규정이 사실상(substantially) 모든 무역에 대해 철폐되어야 한다(GATT 제24조 제8항 b).

것이다.

이와 같이 다국적 기업의 영향이 있을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오히려 회원국의 경제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분석이 필요하다.

3.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 예외는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FTA에 관한 규제조항을 통해 그 근거를 검토해보자. FTA를 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양국간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비회원국가들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여서는 안된다(GATT 제24조 4항, 5항 b).

둘째, 중간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기간 내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해야 한다(GATT 제24조 5항 c).

셋째, 자유무역협정에 참가하는 회원국은 곧바로 그 취지를 WTO 소관부서에 알려야 한다(GATT 제24조 제7항). 넷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관세 등 그 외의 제한적 통상규정이 사실상(substantially) 모든 무역에 대해 철폐되어야 한다(GATT 제24조 제8항 b).

그러나 여기서 「사실상 모든 무역」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업부문과 같은 민감산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국내에서 개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염려한 현실이다.

4.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추진경과

'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한·칠레 FTA를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FTA 추진과정에서 농수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하고 협상과정에서 예외인정을 최대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칠레 FTA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급 정보교환회의(한·칠레 FTA추진 고위급작업반 준비회의)를 '99년 4월(4. 13~15, 서울)과 6월(6. 21~23, 칠레 산티아고)에 두 차례 개최하여 양국 무역 및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제1차 공식협상은 '99년 12월 14~17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칠레측이 마련한 각 분야별 협정초안(Text)을 중심으로 한·칠레 FTA 체결방향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교환하였고, 기준세율은 2000년 1월 1일 실행세율을 적용기로 하였다.

제2차 공식협상은 2000년 2월 29일~3월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동 회의에서는 양국의 관세양허안을 상호 교환하고 FTA 협정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공산품의 관세양허안만을 전달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에 대해서는 제3차협상(2000. 5. 16~19일간 칠레 산티아고) 전에 칠레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FTA 협정문안은 3차협상시 농산물 관세양허안과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칠레 FTA 제3차협상이 칠레 산티아고에서 2000. 5. 16~19일간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칠레측은 우리측 양허안의 주요 농산물 대부분이 관세철폐 미제시(WTO 이후 논의)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측도 칠레의 공산품 양허안에 우리 관심품목이 예외로 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양국 모두 상대국 양허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양국은 상호 관심품목 리스트를 교환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0년 7월이후 연기된 제4차협상이 2000. 12. 12~15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포도·키위·자두에 대해서는 계절(특혜)관세, 옥수수, 보리, 밤, 맥아, 대두, 사료용 근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 다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WTO 농산물협상 이후 논의의 양허안을 제시하였으나 칠레측은 관세철폐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외에 시장접근, 동·식물 검역제도(SPS), 원산지증명, 긴급관세(SG) 등 FTA분야별 협정문(Text)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2001년 3월초순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5차협상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우리측은 칠레측이 제시

한 공산품 양허안을 납득할 수 없어, 우리는 실무협의단을 칠레에 파견하여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해 협의(3. 8~9일간)하였다.

5. 한·칠레협상의 진단과 처방

이제 자유무역협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으므로 그 실제위에 한·칠레 협상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그러면 협상의 갈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통상정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여론이 수렴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계의 여론표출이 자칫 엄격한 사실판단보다는 다소 성급하게 가치판단을 하려들면서 이것이 집단이기주의적 충동로 변질된다면 국민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이 때 일수록 진정한 국익을 위해 심층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판단의 단계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가서 냉정을 되찾는다면 농민단체와 경제단체, 농업보호론자와 개방론자 그리고 당정간, 부처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협상대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의 효과에 관한 이용가능한 심층분석 정보가 생산되어 있다. 다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상호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토론의 기회와 홍보가 부족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제 필자가 본 협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분석자료를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이번 한·칠레간 협상연기에 관한 주요 내용 중에서 칠레측의 요구와 우리측의 협상자세를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협상연기의 주요인이 그동안 칠레가 향후 10년내 모든 품목의 관세철폐를 주장해왔으나 최근 우리측의 농산물 양허안이 그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문제시 하면서 타이어, 세탁기 등 257개 품목에 달하는 공산품을 협상에서 제외 또는 10년간 연차적 관세인하

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칠레측은 이미 2001년 현재 관세율이 약 8%수준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면서, 현재의 우리 농산물 평균 관세율이 약 68%수준에 있는 한국도 똑같이 칠레수준에 맞추어 10년 이내에 칠레 관심품목(주로 1,432개 품목의 농산품)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산술적인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농산물 예외조치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국제관례에도 크게 벗어난 요구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이처럼 공산품을 예외품목으로 요구하는 것도 통상관례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협상과정에서 한번 던져 볼 수 있는 상투적인 수단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본 협상이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을 뉘엿게 확인한 칠레가 협상을 깨기 위한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 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분명히 두나라 모두에게 별다른 경제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팀이 본 협상을 연기한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된다.

이제 두 번째 사실판단 자료로써 본 협정이 한국과 칠레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주요 분석결과만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요 지표들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한·칠

레 양국의 국민후생이 협상이전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한국 0.05%, 칠레 0.008%)으로 증가한다. 여기서 경제 전부분의 관세를 완전철폐할 경우와 농업부문의 관세철폐를 예외로 할 경우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 0.0001%이고, 칠레의 경우는 0.007%에 불과하다.

둘째, 무역수지는 한국, 칠레 모두 협상으로 인해 악화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국이 협상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협상 당사국인 한국과 칠레는 오히려 악화되고 무역(수지)이전효과는 양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GDP의 변화는 한·칠레 FTA 체결시 양국 모두 극히 미미한 수준(한국, 칠레 모두 약 0.1%)으로 증대된다. GDP도 농업을 포함할 경우와 제외할 경우의 차이는 거의 없다.

넷째, 물가수준의 변화는 한·칠레 FTA 체결시 양국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렇다 할 경제적 실익이 없다. 또한, 불가피한 경제외적 이유 때문에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농업부문을 최대한 유보 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지구반대쪽에 있는 칠레와는 경제구조가 상호경합적이고 통상 경제적 거리가 너무 멀며, 이

미 우리에게 비해 칠레의 무역장벽이 낮고 교역 비중도 작기 때문에 본 협정에서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

둘째, 칠레와의 본 협정에서는 농업을 제외한 경우와 농업을 포함한 경우



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거의 같았다.


셋째, 농업의 특성상 과일과 같은 특정작물이 개방되면 다른 작목들의 수급 균형까지 교란시켜서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미 이 교란을 경험했다. YS정권은 57조 규모의 UR 농업대책으로 그 피해를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넷째, 특히 세계농산물 수출국단체(케언즈그룹)인 칠레와의 협정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킨다면 차기 WTO협상과 여타 국가와의 FTA에서는 농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칠레의 농업분야에는 고도의 기술과 자본력이 수반된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며, 이미 그들은 과일, 축산물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농업이 협상내용에 포함될 경우 그 피해가 기대이상의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여섯째, 농업은 시장가치 평가액보다 평가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진국들도 FTA에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형편이 유사한 일본은 자유무역협상시 농업부문을 제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요컨대, 이번 한·칠레 협상의 연기는 보다 현명한 협상대책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된다. 정책은 그 정권의 사회·정치적 정당성의 근거가 됨으로, 당정은 잘못된 통상정책으로 인해 그 정당성의 근거를 의심받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될 것이다.

동시에 모든 지식인들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본 협정이 당리당락에 의한 정치적 산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필자연락처: 053-950-5770〉

천연 미네랄 공급 소식

❖ 우리와 같은 집약 축산을 하는 여건에서는 각종 질병예방, 대사장애 해소, 산유량 증가와 유질 향상, 번식장애 해소 등을 위하여 천연미네랄의 급여는 필수적입니다.

❖ 아그리-민(AGRI-MIN)

마그네슘, 칼슘 등의 다량미네랄과 미량미네랄을 골고루 갖춘 제품으로 제1위내 pH조절제로 발효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며, 반전을 조절제로 미생물의 성장효율을 증가시켜 산유량 증가, 번식장애 해소와 각종 질병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 벤토나이트(BENTONITE)

미량미네랄과 최고의 완충제로 제1위내 pH를 조절하여 각종 효소의 증식과 활성화로 완전한 사료의 소화흡수와 산독증 예방과 강한 항병력을 갖게 한다. 높은 흡수율과 양이온 교환능력은 농약 등 유해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과 고능력우와 집약축산의 경쟁력을 갖게하는 필수 영양물질이다.

● 수입원 **한국 미네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75-9 해진빌딩

TEL : (031)964-6367, H.P : 011-446-8252